

전 문

민족의 현대사와 함께 해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해온 대신대학교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성해 왔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와 민족복음화에 앞장서 왔으며, 또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시기에 복음과 사회정의를 위해 온 정열을 불살라온 우리 대신인은 본교는 물론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 대신 인들이 하나가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모든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양상을 철폐하고 민주·자주적 총학생회의 구체적 실현과정으로서 전 대신인의 일치된 뜻을 모아 이 회칙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신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학문, 진리탐구에 전념하며 학문과 목회를 통한 사회현실적인 사역능력을 배양하고 본 대학교의 건전한 학풍과 온전한 신학사조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전도사로서의 인격도야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동지적 결합으로 신학도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대신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대신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학교 당국의 관계위원회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자기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다.

제8조 (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대의원회, 각 학과 학생회를 둔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구이다.

제10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제외한다.

제11조 (의장)

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의 유보시는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2조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구로써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3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11월중 본회에서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2/3), 회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총회는 한 달 전에 총학생회장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성수 및 의견)

학생총회의 회의성수는 본회 회원의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족수 미만일 경우 의장이 회의 성수 가부를 참석자들에게 물은 후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성수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5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본회의 최고기구이다.

제1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총학생회장, 사무국장, 문서국장, 기획국장, 재정국장, 각 학과별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 ② 본회의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 ③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회칙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 ⑤ 집행부의 업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전박적인 사항을 보고 받아 심의, 조정, 검토 할 수 있다.
- ⑥ 기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 ⑦ 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과 집행부원의 임명권 및 경질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학과별 학회임원들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각 학과별 학생회장의 임명권 및 경질권은 총학생회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

제18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별된다.

-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고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재적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집 행 부

제20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집행에 관한 최고기구이다.

제21조 (구성)

- ① 사무국장, 기획국장, 각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이때 정.부총학생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② 각 부에서는 부장의 재량으로 1인의 차장을 두고 업무수행 시 필요한 부원들을 2인 이상 둘 수 있다.
- ③ 집행부의 제반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총무부, 신앙부, 학술부, 친교부, 홍보부를 둔다. (단, 사무국장의 유보 시 기획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부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② 각 부는 활동계획, 예산, 결산보고를 협의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집행부는 원활한 제반활동을 위해 다음 각 부서를 둔다.
 - 총무부 : 본회의 사무, 물품관리, 회계 및 본회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신앙부 : 학내·외의 전도 및 선교 활동과 예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홍보부 : 본회의 모든 홍보와 방송, 섭외에 관한 모든 활동을 관장한다.
 - 친교부 : 학내·외의 체육행사 보건위생 및 친선도모 등 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학술부 : 학내·외의 학술활동 및 각 학회별 학술지 발간을 돕도록 한다.

제23조 (소집)

- ① 사무국장이 주제로 매월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 ②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간의 연석회의를 총학생회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매월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고 이때 총학생회장은 연석회장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 5 장 대의원회

제24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와 학생자치기구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제25조 (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년 과대표로 구성하며 60인 이상의 학과는 총무 1인을 포함하고 전임의장은 고문으로 참석한다. 단,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고, 기타 학교 내 기구의 임원은 대의원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6조 (임원)

의장 1인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은 대의원의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사전 동의권 및 개정 발의권
- ② 총학생회 회칙개정의 발의권
- ③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④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
- 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의 심의 및 감사권
- ⑥ 본회 및 학생자치기구의 재정 및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권
- ⑦ 대의원회 의장 선출권
- ⑧ 학교당국 관계자, 총학생회장 운영위원과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 ⑨ 집행부 각 부장의 해임 요구권
- ⑩ 각 학과별 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에 대한 발의권
- ⑪ 학교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권
- ⑫ 기타 대의원회의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28조 (의결)

- 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②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임시)

해당년도 선출 시부터 익년 선출 시까지 한다.

제30조 (회장의 재의 요청)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를 행해야 한다.

제31조 (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여 시행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 의장의 요구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상황 시 총학생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32조 (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제33조 (업무 및 권한)

- ① 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 집행부원의 임명권 및 경질권을 가진다.
(단, 각 학과별 학회장의 임명권 및 경질권은 총학생회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 ③ 본 회의 활동과 관련된 학사행정에 대하여 학교 해당회의에 참석하여 발의 및 질의를 할 수 있다.
- ④ 총학생회 및 전체 학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대의원 의장의 승인이 있을시 대의원회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⑥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긴급을 요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총학생회장 선거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4조 (임기)

-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후 당해 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 ② 총학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다 (단, 총학생회장만은 연임할 수 없다.)

제35조 (선출)

- ① 정·부 총학생회장 및 학생임원(국장급)은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팀별로 선출된다.
- ② 정·부 총학생회장 및 학생임원(국장급)의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 ③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격은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한 자여야 하며 성적은(평균평점3.0)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후보등록 시 각 후보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0인 이상의 추천서, 후보 등록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 ⑤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⑥ 선거세칙은 그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 (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총학생회장의 유고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제 7 장 학과별 학생회

제37조 (지위)

각 학과별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자치기구이다.(이하“학회”라 칭함.)

제38조 (구성)

각 학회는 해당학과의 전체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39조 (학회장)

각 학회장은 해당학과를 대표한다.

제40조 (업무 및 권한)

- ① 각 학과의 업무 및 학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② 학회별 M.T 모임 등의 학생활동 계획 시, 예산안, 활동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1조 (회칙)

각 학회는 본 회칙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진다.

제42조 (설립)

신설학회 설립 시, 학회구성은 신설학과 3학년 이상의 학생을 필요로 하며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를 통과해야 설립한다.

제 8 장 재 정

제43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학교보조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44조 (회비의 징수 및 관리)

본회 회비는 매 학기 학생들의 등록 시, 학교의 협조를 받아 총학생회에서 징수하고 재정국이 회비를 관리한다.

제4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기에 준하되 당해 연도 각 분기별 예·결산을 행한다.

제46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 ① 예산은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 구성된 후 10일 이내에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가 최종 확인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대의원회의 최종 확인 후 공고한다.
- ③ 대의원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5일 이내에 확인한다.
- ④ 대의원회에서 확인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학생회장의 결재와 확인 후 집행한다.
- ⑤ 각 학회별 지원금은 학생회비의 20%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47조 (가예산과 경정예산)

- ①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이 정한 기간 내에 대의원회의 확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간의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 (감사)

- ① 예산 및 행정집행은 정기감사(2학기 감사, 최종감사)를 두며, 1학기 감사의 추가 권한은 대의원에게 둔다.
- ② 대의원회는 결산보고 및 감사결과를 공고를 통하여 매 분기마다 전학생들에게 공포한다.
- ③ 총학생회의 요청 시, 대의원회 예산에 대한 결산안(영수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장 선 거

제49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 제한한다.

제50조 (선거 방법)

본회의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51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52조 (임기)

- ① 정·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11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대의원회의 최종확인 후 공고한다.

제53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4인의 국장 입후보자는 6인 1조가 출마하고 학생총회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투표자의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 ① 동일 득표자가 2인일 경우 제비뽑기를 한다.
- ② 단일 후보 등록 시 투표자수의 2/3이상 찬성 시 선출한다.

제54조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5조 (대의원)

대의원은 각 학과의 학년별 모임에서 재학생의 직접선거로 각 1명씩 선출한다. (단, 60인 이상의 학과는 총무까지 2명을 선출한다.)

제56조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구성) 당선된 사무국장이 그 후 7일 이내에 집행부를 구성하며 총학생회장에게 인준 받는다.

제57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의원 의장이 대의원 중 5인 이상, 재학생 중 10인 이하로 총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후 자동적으로 해체한다.

제58조 (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 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90일 이내 일 경우에는 궐위 시로부터 부총학생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② 대의원회 의장이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 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59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 장 회칙개정

제60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의원총회 재적2/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발의가 있을 때 각각 회원 5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회칙개정을 발의하여 총학생회장이 총회를 소집한다.

제61조 (의결 공포)

- 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서를 첨부한 후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 단, 대의원회가 발의한 후 회칙개정안은 대의원회가 심의할 수 없고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 ② 의결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 11 장 부칙

본 회칙은 통과 즉시 시행한다.(1985년)

부 칙

- 1. 제48조 3항,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 1985년 0월 0일
- 2017년 1월 1일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